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9. 4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 → 2024. 9. 1. 개정 판 (시행 2024. 9. 30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14/compare?from=1464&to=156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49:1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총장(위원장), 학술정보원장(서기)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산학처장, 사무처장, 사무부처장, 교무부처장, 재무처장, 기획평가팀장, 예산팀장, 학생복지팀장, 학술정보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-03-07>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	제34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(위원장), 학술정보원장(서기), <u>부총장, 학술정보부원장</u>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산학처장, 사무처장, 사무부처장, 교무부처장, 재무처장, 기획팀장, 예산팀장, 학생복지팀장, 학술정보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-03-07> 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35조(위원장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 의결사항을 본교 의결회의(행협)에 보고 한다.	제3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. <개정 2024-09-30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술정보원(도서관)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(위원장), 학술정보원장(서기), 부총장, 학술정보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연구산학처장, 사무처장, 사무부처장, 교무부처장, 재무처장, 기획팀장, 예산팀장, 학생복지팀장, 학술정보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 중 "위원장 및 부위원장"을 "위원장"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"위원회 의결사항을 본교 의결회의(행협)에 보고 한다."를 "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